

성남시 미니태양광 신청 방법

1. 접수 방법

- 서류 접수(원본서류 접수 원칙)
- 접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68(원흥동) 2층 솔라테라스 사무실, (우편번호) 10552

2. 신청서 작성

- 첨부된 참여 신청서를 작성.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설치용량, 서명)
-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 동의서는 필수
 - ↳ 소유자 동의서에 '소유자의 인감 날인'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 소유자 동의서에 서명을 했을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필요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3.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 각 서류 하단의 인/서명 란은 반드시 서명이나 도장 날인(필수)
- 작성이 어려운란은 공란으로 기재

4. 상품별 제품 가격, 보조금, 자부담금(원)

상품명	제품가격	보조금	자부담금
거치형 445W	9500,000원	760,000원	190,000원
거치형 890W	1,900,000원	1,520,000원	380,000원
앵커형 445W	1,000,000원	800,000원	200,000원
앵커형 890W	2,000,000원	1,600,000원	400,000원

별첨 1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연락처	
주 소			
주택형태	공동주택(), 단독주택()	설치용량	W
설치장소	난간(), 옥상()	전월전기사용량	kWh
설치여건	방위각() 음영여부()	난간의 안정성	
설치기간	2025년 월 일 ~ 월 일		
설 치 비	총사업비	도 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원	원	원
			자부담 원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문, 표준계약서 등 제반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참여업체

솔라테라스(주)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 | | |
|--|---------------|
| 1.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
|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동의서 1부 | [별지 제1-2호 서식] |
| 3.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1-3호 서식] |
| 4. 사전점검표 1부 | [별지 제1-4호 서식] |
| 5. 설치 계약서 사본 1부 | [별지 제1-5호 서식] |
| 6. (전체세대) 소유자 동의서 1부 | [별지 제1-6호 서식] |
| 7. 소유자 동의서 1부 | [별지 제1-7호 서식] |
| 8. 건축물대장 1부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첨부) | [법정서식] |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 및 성남시가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법,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참여기업

솔라테라스(주)



또는 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동의서	
☐ 공동주택명 :	☐ 연 락 처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연 락 처 :
☐ 세 부 주 소 :	
(동 / 호수)	
☐ 참여업체명 :	솔라테라스(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의 5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2025년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신청 및 설치에 동의하고, 향후 설치효과 검증을 위해 신청인의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정보를 성남시에 제공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2025. . . (공동주택명) 관리소장 (직인)	

[별지 제1-4호]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전점검표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주 택 명		준공연도		
베란다 방향	(예 : 정동, 남동, 남서, 정남, 남남서)			
설치장소 조건	(예 : 건물 층수 및 음영 및 조경 유무 확인)			
단계별 점검사항	(예 : 준공연도 따른 점검 사항 참조)			
준공연도	점검 사항	단계별 점검 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15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1단계 (육안검사)	-안전에 영향을 주는 현저한 균열, 절곡, 파손, 부식 여부 -볼트, 너트 등 체결및 용접 상태 불량 여부 -그 밖에 안전 결함 여부	
15년 이상 25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하여 구간별 하중(창문과 반대 방향)을 가했을 때 이탈 여부	
25년 이상 35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하여 구간별로 흔들었을 때 이탈이 없고 변위가 ±5cm 이하 여부	
35년 이상	(1단계) 현장 육안검사 (4단계) 필요시 지지력 시험	4단계 (지지력 시험)	-난간 상부 손스침대 0.9kN 집중하중 만족	
점검결과				
2025. . .				
참여업체명: 슬라테라스				
점 검 자: 최정동 (사)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사공 업체	솔라테라스(주)	대표자	최 정 동	사업자등록번호	896-88-00447		
			주 소	(1055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68				
			연 락 처	1566-3221	E-MAIL	solarterrace@naver.com		
계 약 내 용	분 야	미니태양광	설비타입		설치용량	W		
	설치장소							
	설치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도 보조금	일금	원			
	사업비 총액	일금	원	시 보조금	일금	원		
	계약금	일금	원	신청인자부담	일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신청인 부담비용) ①(신청인)은 (참여업체)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참여업체)는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참여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참여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4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참여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참여업체)는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업체)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성남시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25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또는 인)					
(참여업체) 솔라테라스(주)								

[별지 제1-7호]

①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가 작성 ②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소유주가 작성

소유자 동의서			
소유자 성명		연락처	
설치 장소 (도로명 주소)			
참여기업명	솔라테라스(주)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따라 해당 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동의합니다. 2025. . .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